KAAB 인증절차 보완 및 개정

1. 주요 보완 및 개정 사유
2. 주요 보완 및 개정 내용
3. 기타

2008. 01. .

KAAB 사단법인 한국건축학 교육인증원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KAAB 인증절차 보완 및 개정

1. 주요 보완 및 개정 사유

- 2006년 국내 최초 인증실사에 초청된 국외 전문가로부터 인증기준을 앞으로 최소 5년간은 바꾸지 않을 것을 제안 받음에 따라,
- 공평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인증기준은 유지하고 운영과정 중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으로 보완 및 개정 필요.
- 2nd Architectur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table 회의에서 각국의 인증기준에 대한 Gap Analysis에서 나타난 Annual Report 부재에 대한 대응 필요.
- 2007년 제 3차 이사회(9월12일) 및 제 4차 이사회(11월29일)에서 각각 승인 됨.
- 보완 · 개정된 인증절차는 2008년 1월부터 시행.

2. 주요 보완 및 개정 내용

- 인증종류(기간) 개정 보완
-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신설
- 인증유지비 신설
- 인증신청비 변경 예정
- 인증후보자격 및 인증신청 기한 등

3. 기 타

- 인증자문 사업

가. 인증의 기간(종류)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	사 유
5년 인증	**5년 인증** : 만일 부족사항이 매우 사소하고 이러한 부족사항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프로그램은 5년 인증을 받게 된다.	**5년 인증** : 부족사항이 사소하고 이러한 부족사항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프로그램은 5년 인증을 받게 된다.	1) 현행의 조건부 2년 인증의 경우 인증을 부여받은 다음 연도에 곧바로 인증신청 및 준비를 해야 하며, 이는 실사에서의 부족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개선, 반영하기에 준비기간이 너무 짧음. 2) 2년 기간 인증과 3년 기간 인증이 불과 1년 차이지만 신청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에서는 2년 인증 취득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동일한 인증 효과를 갖지만 2년 인증은 부정적(실패)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3) 5년 인증과 2년 인증에 대한 기간차이(3년)가 크고 5년 인증과 2년 인증 조건의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상향 이익 또는 하향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4) 조건부 인증에 대한 후속 조건 및 조치 보완(예: 2년 조건부 인증을 연속으로 받았을 경우에 대한 조치 및 철회 규정 명시 등) 5)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 시킬 수 있는 부족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부족 및 개선의 의지와 역량이 확인되지 않을 때 인증은 철회되며 해당 프로그램은 인증후보자격 신청부터 시작한다.
3년 인증	-	**3년 인증** :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 부족사항이 발견되었지만 이러한 부족사항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확실하고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확인되는 경우, 프로그램은 3년 인증을 받게 된다. 차기 심사에서 3년 또는 2년 인증을 받았을 경우 차차기 심사에서는 반드시 5년 또는 3년 인증을 취득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인증은 철회된다.	
조건부 2년 인증	**조건부 2년 인증** : 학생수행평가에서의 부족사항이 발견되고, 이러한 부족사항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건인원 인증 조건에 반하는 주요한 부족사항(예를 들어 물리적 시설, 재원 등)이 발견되는 경우이다. 이때 실사단이 2년 뒤 방문 전까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명시하고 2년간 인증을 부여한다.	**조건부 2년 인증** :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중요 부족사항이 발견되고 이러한 부족사항을 시정하려는 의지와 역량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은 조건부 2년 인증을 받게 된다. 이때 실사팀이 2년 뒤 방문 전까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명시하고 2년간 인증을 부여한다. 프로그램은 차기 심사에서 최소 3년 또는 5년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인증은 철회된다.	
일시적 정지	**일시적 정지** :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킬 만큼 중대한 부족사항이 발견되고, 이를 시정할 의지 및 능력이 의심스러운 경우이다. 이 때 실사단이 1년 후에 방문할 때까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표시하고 1년간 인증 정지를 부여한다.	**인증유예** : 해당 프로그램의 심각한 준비부족에 의해 적정한 실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후 적당한 시기에 다시 실사를 수행한다. 이 때 실사팀이 재방문할 때까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표시하고 인증유예를 부여한다. 인증유예는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다.	
인증거부 (인증철회)	프로그램의 심각한 부족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을 거부한다.	**인증거부/철회** : 최초인증실사에서 실사팀이 실사기간에 인증조건에 부합하는 주요하고 시정할 수 없는 사항들을 발견했을 때 또는 자체평가보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인증이 거부된다. 또한 조건부 2년 인증 및 3년 인증을 부여받은 프로그램에서 인증철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인증이 철회된다.	

나. Annual Report 신설의 건

구 분	연례보고서 작성 항목	기술 내용	신설 사유
1	주요 대응 내용 요약	실사팀보고서에서의 지적 내용에 대한 대응 및 성과 내용 요약	1) Annual Report 제출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작성된 실사팀보고서에서의 부족사항 및 주의를 요하는 항목 등 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대응을 매년 기술하여 차기 인증실사 및 최종심의에 반영. 2) 2nd Architectural Accreditation/Validation Roundtable 회의에서 각국의 인증기준 관련 Gap Analysis에서 나타난 Annual Report 부재에 대한 대응 3) 제출된 통계자료의 누적취합 및 분석을 통해 각종 유용한 정보 제공(취업률, 취업분야 등) 4) 조건부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5년 인증으로 재심의를 위한 수단 및 기본 자료로 활용 가능. 5) 재심의를 통해 시간 및 실사비용 절감. 6) 연례보고서의 제출 마감일은 매년 2월 말.(1월 인증 최종결과 및 7월 인증 최종결과의 경우 동일) 7) 연례보고서는 인증을 부여받은 프로그램에 한함. 8) 연례보고서 제출 연장 신청은 정당한 사유에 한하여 승인되며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2	실사팀 의견	실사팀 의견에 대한 대응내용을 기술 할 수 있음	
3	긍정적 항목	긍정적 항목 기술(VTR과 동일)	
4	부정적 항목	부정적 항목에 대한 시정내용 및 성과 내용 기술	
5	주의를 요하는 항목	주의를 요하는 항목에 대한 대응내용 기술	
6	인적자원 통계	교수 변동사항 및 재학생(휴학생 포함), 졸업생(취업현황 등) 통계자료	
7	재심의(집중평가) 신청서	※ 재심의(집중평가) 신청 내용 참조	
8	기 타	기타 부가자료(필요시)	

※ 재심의(집중평가) 신청

1. 조건부 2년 인증(개정 전 및 개정 후) 및 3년 인증(개정 후)을 부여받은 프로그램의 경우에 한함.
2. 재심의(집중평가) 신청서는 지적된 부정적 항목 및 주의를 요하는 항목 등에 대한 대응(개선내용 및 계획)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근거자료를 제출
3. 재심의(집중평가)는 인증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심사 방법은 서류심사 후 인증사업단에 실사를 의뢰하며, 실사팀 구성은 실사팀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 3명과 해당 프로그램에 실사 참여한 실사팀 위원 중 1명을 참관인으로 총 4명을 배정. 실사기간은 1일을 기본으로 최대 1박2일을 넘지 못하며, 실사항목에 따라 실사일정과 전시 방법 및 규모는 실사팀장과 프로그램과의 협의 하에 결정. 실사팀은 실사팀보고서와 최종제안서를 제출하며 인증실사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갖는다.
4. 재심의(집중평가) 결과로 적합판정의 경우 인증기간은 ①5년 인증으로의 복원, 또는 ②5년 인증으로의 연장(최초의 경우)으로 한다.
5. 재심의(집중평가) 결과로 부적합판정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인증 연장을 위한 인증신청 및 인증실사를 인증유효기간 내에 준비해야 한다.
6. 재심의(집중평가) 신청을 위한 신청비 및 실사비용은 별도.(인증비용 참조)
7. 2006년 최초 인증을 부여받은 프로그램부터 적용

다. 인증유지비 신설 및 인증신청비 인상의 건

구 분	현 행	변 경	사 유
인증후보자격 심사 신청	100 만원/신청	100 만원	동결
인증신청 심사	100 만원/신청	100 만원	동결
인증신청비	1,300 만원/신청	1,500 만원	- 비용 부담으로 인상 - 2008년 후반기(10월) 신청부터 적용
인증유지비	-	100 만원/년	-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증유효 증명 - 연례보고서 제출 시 납입
계	1,500 만원/신청	1,700 만원/신청 + 인증유지비/년	
재심의(집중평가) 신청비	-	서류심사 및 인증실사 500 만원	- 인증유지비와는 별도로 서류심사 신청비 납입

라. 인증소급 및 인증신청 제한 기한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졸업생의 인증소급 적용	-	인증신청서류에 첨부	졸업생의 인증소급을 위한 관계서류 제출 - 졸업생들의 해당 이수 교과과정 및 - 이수과정(개별 성적증명서) 등 신청서 양식 참조
인증신청 제한 기한	-	프로그램 개설 후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5년 이내(학부, 대학원 동일) 인증후보자격 취득 및 인증신청 완료	제한 기간 이후 신청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년 인증기간 부여 제한 및 졸업생 인증 소급적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기 타 - 인증 자문 사업

구 분	인증원 사무국	자문 위원	비 고
인증원관계자	50 만원	50 만원	- 교통비, 식비, 숙박비(필요시) 별도 - 인증자문 신청서 제출 - 신청은 21일 전 까지
	계좌 이체	현지 지불	